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유산산업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5
2. 주요 사항별 검토	7
가. ‘국가유산산업’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안 제2조)	7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8
다.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안 제6조)	10
라.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	12
마.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안 제8조)	13
바. 연구개발사업 추진·지원 등(안 제10조·제11조)	15
사. 전담기관 지정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등(안 제12조)	17
아.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제3장)	19
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제4장)	23
※ 참고자료	2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안은 국가유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기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보존 중심의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유산산업의 창업·유통·연구개발·해외 진출 등과 같은 산업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또한, 기존 법률 내에서는 유산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 작성, 전담기관 설치 등 제도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등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국가유산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 융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라 국가유산 콘텐츠의 온라인화 및 글로벌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기준 마련, 지식재산 보호,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통계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특히 기본계획 수립, 분류체계 운영, 전담기관 지정 등 추진체계 전반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적 수행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본 제정안은 단순한 보존 중심의 유산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의 산업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국가유산과 관련된 창업·디지털콘텐츠·연구개발·유통·국제교류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확산 등 다층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국가유산청**의 의견과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 및 진흥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5개 장, 28개 조문)과 부칙(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제4장(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하여 규정된 조문을 추출하고 국가유산으로 확대하여 제정안에 편입시키며,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제정안 제2장(국가유산산업 기반 조성)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업 통계 작성, 정보체계 구축, 특수분류체계 수립, 정보 제공,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담기관 지정 등과 제3장(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조문을 두었으며,

- 총칙(제1장)과 보칙(제5장)은 일반적인 제정법의 일반적인 입법 체계를 따르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유산산업 기반 조성	제5조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7조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
	제9조	국가유산정보의 제공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장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제13조	창업 및 유통 지원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 기준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7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4장 국가유산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18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19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0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1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 개발·연구 촉진
	제23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4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제25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6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5장 보칙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국가유산산업’ 등 새로운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개념을 따르고, “국가유산산업”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는 국가유산 관련 기록,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산업”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정안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는 국가유산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조항의 적용 대상과 해석 기준을 일관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 체계의 명확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분야별 지원정책,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은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국가유산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
3.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법률에 계획 수립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문화유산과의 연계성, 부처 간 협력, 연차별 실행계획의 체계화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국가유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산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가유산은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문화유산기본계획만을 연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무형유산과 자연유산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단절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봄. 따라서 국가유산산업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관련 법령 및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작성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가유산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산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며, 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신뢰도 높은 통계 기반이 필수적임. 법률에 통계 작성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 규모·구조·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 제6조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6조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은 …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계 작성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통계 작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체계에는 국내외 산업 현황, 사업자 수주 실적, 연구개발 정보, 전문인력 현황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체계는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구체적인 구축·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7조(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국가유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산업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과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산업은 정책 기획, 예산 배분, 성과 평가 등 행정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와 정보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요구됨. 정보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집 항목과 연계 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마.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산업의 정보, 인력, 기술,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정보·인력·기술·제품·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산업은 여러 분야가 혼재된 융·복합적 산업으로, 정책 수립과 행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세부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특수분류체계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다면 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통계·정보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미 ‘국가유산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일반 산업 분류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산업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유사 입법례를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라는 용어를 쓰는 등 일반적으로 ‘특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의 명칭과 내용을 “국가유산산업 분류체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바. 연구개발사업 추진·지원 등(안 제10조·제11조)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 4.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

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에 신속히 이전(移轉)되고 산업화되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공공기관, 대학, 민간 등과 협력하여 기술 동향 조사, 연구개발, 기술 평가, 권리화 및 실용화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가 민간에 신속히 이전되어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산업의 혁신역량과 시장 확산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사. 전담기관 지정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담기관이

통계 작성, 정보체계 운영, 연구개발성과 이전, 창업·유통·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2.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창업 및 유통의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6.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지원
8.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9. 국가유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
10. 국가유산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정안
④국가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산산업은 통계 작성,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담 조직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체계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 간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2조제2항제2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의 근거 조항이 제11조임을 명시하고, 제12조제2항제6호와 제10호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이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가유산청은 연구개발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연구개발산업의 수행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이전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전담기관의 업무에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제3장)

- 안 제3장(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산업 전반에 걸쳐 창업 촉진, 유통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식재산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장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제13조(창업 및 유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국가유산산업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⑥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에 있어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무형유산의 전형이 유지되도록 분야별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산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3.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전시회 등의 개최
5. 국가유산산업등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6.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등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①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고 유통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준·취소 절차 등을 통해 인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문화유산의 원형성과 전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적 활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16조는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전시회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가유산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유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안 제3장은 국가유산을 산업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창업과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식재산 보호 등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경제·사회적으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의 원형과 무형유산의 전형이 유지되도록 분야별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에는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외에도 자연유산도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¹⁾, 안 제15조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제16조제1항에서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병기하고 있으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는 이미 국가유산산업의 구성 요소 또는 하위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국가유산산업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²⁾.

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제4장)

- 안 제4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을 통해 국민의 향유

1) 국가유산청도 이와 같은 입장임.

2) 국가유산청도 이와 같은 입장임.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 플랫폼 구축, 공공정보 활용, 소외계층 지원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장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18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 개발·연구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4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①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과 이용·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장의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³⁾)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⁴⁾, 디지털콘텐츠를 국가유산산업의 핵심 분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이라는 제정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 제정안은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와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은 가져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자는 안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포함되었고 후자는 안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을 삭제한다.

참고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200	문화재청 (現국가유산청)	- '22년 기준 문화재산업조사 실시 - 국가통계승인(승인번호 15004호)
'24년	200	국가유산청	- '23년 기준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실시 * 전년대비 표본 1,500개→2,000개 확대 - 통계청 주관 '2024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선정' 개발·개선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제정·고시
'25년	200	국가유산청	- '24년 기준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실시

○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21~'25)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12,978	문화재청 (現국가유산청)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11개 과제 -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24년	8,195	국가유산청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11개 과제 -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1개 과제 - 특허 74건, 논문게재 228건, 기술이전 6건(145백만원), 사업화 14건, 인력채용 56명 등 누적 성과('21~'24)
'25년	9,272	국가유산청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11개 과제 -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1개 과제 - '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과제로 개발된 '아치3D라이너' 국가유산 기술 분야 최초 "2025 CES 혁신상" 수상

○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 개발(R&D) ('24~'28)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	-	-
'24년	1,514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4개 과제 -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2개 과제 - 특허 3건, 논문게재 8건, 정책활용 1건
'25년	4,328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6개 과제 -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3개 과제

○ 국가유산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300	문화재청 (現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9월) - 참가업체 96개, 참관객 5,007명 - 국내 바이어 상담 163건 -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75건 (계약 50건, 5,709백만원)
'24년	299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9월) - 참가업체 112개, 참관객 4,060명 - 국내 바이어 상담 57건 -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49건 (계약 36건, 5,738백만원)
'25년	299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6월) - 참가업체 129개, 참관객 5,423명 - 국내 바이어 상담 117건 -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146건 (계약 66건, 12,300백만원)

○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17,032	문화재청 (現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 실감형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24년	13,777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 실감형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 사회적 약자 배려 디지털 기반 조성
'25년	12,46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 실감형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 사회적 약자 배려 디지털 기반 조성

○ 국가유산 디지털대전환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15,169	문화재청 (現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 - 원형기록 데이터 세트 53만 건 구축 (‘21~’23년)
'24년	14,255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 3차원 정밀기록 DB구축 2,190건 (‘21~’24년) - 민간 클라우드(네이버)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 운영 실시로 48만 건 데이터 무료개방(‘24.5.17.~)
'25년	13,467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